

보호비용 [변경]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-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일		처리기간 15일 이내	
신청인	성명			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		
	주소				전화번호		
가족관계	신청인 과의 관계	성 명	생년월일	학력/재학 여부 (학교명/학년/반)	건강 상태 (장애/질병)	취업 상태	
						직업	직장명
보호비용 종류	[]생계비 [] 아동교육지원비 [] 아동양육비 [] 퇴소 시 자립지원금 [] 퇴소 시 자립수당 []의료비						
통지 방법	[] 전자우편(E-mail) [] 문자메시지서비스(SMS) [] 서면 [] 그 밖의 수단						

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비용을 신청([]변경신청)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신청인)

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과의 관계

(대리신청의 경우)

보호시설의 장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제작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 2. 수업료 또는 납입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 1부(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 음
------	---	------------

안 내 사 항

이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합니다)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와 관련된 사항,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,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, 소득·재산·근로능력 및 취업상태,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,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·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, 금융·국세·지방세, 토지·건물·건강보험·국민연금·고용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·출입국·병무·보호급여·교정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전산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는 5년이 지나면 파기됩니다. 다만,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.

처리절차

